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신자 전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경유)

제 목 매립시설 최소 설치기준 강화요청 관련 업계 의견수렴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업계 현실과 맞지 아니한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소규모 매립시설의 난립과 경제적 채산성 저하로 부실매립장 속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업계 현실에 적합한 기준 마련을 추진키로 7월 정례회의('14.07.04)시 결의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7월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매립 시설 최소 설치기준 강화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업계 건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환경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귀 사에서는 동 건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2014.08.04 (월)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매립시설 최소 설치기준 강화방안 마련 업계 건의의견 제출문서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



담 당 이경대	팀 장 김두섭	사무국장 장기석	상근부회장 신충식	회 장 이민석
협 조				
시 행 한매협 2014 - 25호		(2014. 07. 31)	접수	
우 157-7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등촌동, 우리벤처타운)		/	www.kiwrma.or.kr
전 화 02-718-7900	전 송 02-718-7171	/	kiwrma@kiwrma.or.kr	/ 비공개

# 매립시설 최소 설치 기준 강화방안 마련 업계 건의의견

## 1 현 황

### 가. 매립시설 설치기준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 : 면적 3,300㎡ / 용적 10,000㎥ 이상
-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 : 면적 10,000㎡ / 용적 30,000㎥ 이상

### 나. 산업단지내 매립시설 부지 방치현황

□ 국가산업단지 8개소 중 2개 매립시설 법적 설치기준보다 높은 부지 면적에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

- 부산(부산과학산단) - 23,000㎡ / 경남(진해산단) - 32,000㎡

### 다. 민간 매립시설 설치·운영 현황

□ 정상 가동중인 민간 매립시설의 최소 설치용량 법적 기준치보다 일반-33배/지정-5배 높은 것으로 확인

- 설치·운영시설 최소용량 : 일반-33만㎥ / 지정-16만㎥
- 신규 설치예정시설 최소용량 : 일반-100만㎥ / 지정-22만㎥

< 전국 민간 매립시설 설치·운영 현황 >

시 설 구 분		규모		
		최소	최대	평균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	일반(18개소)	33만㎥ <sup>3</sup>	290만㎥ <sup>3</sup>	120만㎥ <sup>3</sup>
	지정(11개소)	16만㎥ <sup>3</sup>	210만㎥ <sup>3</sup>	60만㎥ <sup>3</sup>
신규 설치예정 매립시설	일반(6개소)	100만㎥ <sup>3</sup>	780만㎥ <sup>3</sup>	270만㎥ <sup>3</sup>
	지정(2개소)	22만㎥ <sup>3</sup>	94만㎥ <sup>3</sup>	58만㎥ <sup>3</sup>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	일반(18개소)	2.4만㎥ <sup>3</sup>	130만㎥ <sup>3</sup>	35만㎥ <sup>3</sup>
	지정(1개소)	10만㎥ <sup>3</sup>	10만㎥ <sup>3</sup>	10만㎥ <sup>3</sup>

## 2 문 제 점

### 가. 현실성 없는 매립시설 최소 설치기준

- 전국 최종처분업체(18개) 중 10만m<sup>3</sup> 미만의 매립시설 설치현황은 전무하며, 100만m<sup>3</sup> 이상 대규모 매립시설이 전체 약 50%를 차지
- 법적 최소 설치기준보다 최소 5배~최대 290배 이상의 대형시설로 설치 / 민간 매립업체 (일반·지정) 평균 90만m<sup>3</sup>의 매립용량으로 설치·운영
  - 최소 규모 : 일반- 33만m<sup>3</sup> / 지정- 16만m<sup>3</sup>
  - 최대 규모 : 일반-290만m<sup>3</sup> / 지정-210만m<sup>3</sup>
  - 평균 규모 : 일반-120만m<sup>3</sup> / 지정- 60만m<sup>3</sup>

< 최종처분업체 매립시설 규모별 현황 > (단위 : m<sup>3</sup>)

구분	계	33만미만	10만미만	33만미만	100만미만	100만이상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18개소 (100%)	0 (0%)	0 (0%)	1개소 (5.6%)	8개소 (44.4%)	9개소 (50%)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11개소 (100%)	0 (0%)	0 (0%)	4개소 (36.4%)	2개소 (18.2%)	5개소 (45.4%)

### 나. 경제적 재산성 보전조치 안되는 소규모 매립시설

- 산업단지내 위치한 매립시설은 관련 인·허가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매립용량으로 인한 경제적 재산성 저하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다. 신규 매립업체도 대형화 추세

- 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신규 매립업체(8개소)의 경우 법적 최소 설치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매립용량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 최소 규모 : 일반- 100만m<sup>3</sup> / 지정-22만m<sup>3</sup>
  - 최대 규모 : 일반- 780만m<sup>3</sup> / 지정-94만m<sup>3</sup>
  - 평균 규모 : 일반- 270만m<sup>3</sup> / 지정-58만m<sup>3</sup>

< 신규 최종처분업체 설치예상 매립시설 규모별 현황 > (단위 : m<sup>3</sup>)

구분	계	33만미만	10만미만	33만미만	100만미만	100만이상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6개소 (100%)	0 (0%)	0 (0%)	0 (0%)	1개소 (17%)	5개소 (83%)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 (100%)	0 (0%)	0 (0%)	1개소 (50%)	1개소 (50%)	0 (0%)

\* 자료출처 : 2013년도 언론 보도자료

## 라. 민간 부실 매립업체 발생 속출

- 민간 부실 매립시설은 평균 24만<sup>3</sup>m<sup>3</sup>(13~37만<sup>3</sup>m<sup>3</sup>)의 매립용량을 갖춘시설로, 법적기준에 비해 훨씬 높은 매립용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채산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실 매립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 매립시설 최소 설치기준 상향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부실 매립시설 규모별 현황 >

(단위 : m<sup>3</sup>)

구분	계	15만미만	15~25만	25~37만	부실매립시설 문제점		
					사업자 부도	시설 방치	관리 포기
부실 매립시설	6개소 (100%)	1개소 (16.7%)	3개소 (50%)	2개소 (33.3%)	4개소 (66%)	1개소 (17%)	1개소 (17%)

## 3 개선 방안 [협회결론]

### 가. 매립시설 최소 설치기준 상향조정

- ▶ 경제성 검토가 반영되지 않은 최소 설치기준 및 신규 매립시설 증가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매립시설 최소 설치기준 강화 방안 마련필요
- ▶ 정상운영되는 민간 매립시설의 평균용량이 90만<sup>3</sup>m<sup>3</sup>임을 감안하여 최소 매립가능 용량을 80만<sup>3</sup>m<sup>3</sup>이상으로 상향조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개정 건의(안)>

현행	개정 건의(안)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생략 3)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 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26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80만세제곱 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생략 3)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26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80만세제곱 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26만제곱미터 : 매립용적 대비 매립면적 산출시 3배수 기준 적용한 경우

80만세제곱미터 : 정상운영되는 민간매립시설의 평균 설치용량(90만<sup>3</sup>m<sup>3</sup>)을 감안하여 기준 적용한 경우

## 나. 산업단지내 매립시설 의무설치기준 삭제

- ▶ 산업단지내 매립시설의 경우 자체발생 폐기물량 부족으로 대부분이 산단외 폐기물 반입처리를 통해 경제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소규모 매립시설이 설치되는 등 매립시설 의무설치 규정이 오히려 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 특히 소각시설의 경우 '09년에 의무설치 규정 삭제를 통해 업계 필요시 자율적 설치를 추진하여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음
- ▶ 따라서 산단내 매립시설도 의무설치가 아닌 업체 자율적 설치를 추진토록 관련규정 삭제 필요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

현 행	개정 건의(안)
<p>제3조(산업단지 등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p> <p>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 (이하 생략)</p> <p>2. ~ 3. (생략)</p> <p>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1. 산업단지·공장: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p> <p>2. 관광지·관광단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생략)</p> <p>나.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p>	<p>제3조(산업단지 등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p> <p>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 (이하 생략)</p> <p>2. ~ 3. (생략)</p> <p>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1. (삭제)</p> <p>2. 관광지·관광단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생략)</p> <p>나. (삭제)</p>

※ 고려사항 : 산업단지 내 매립장 의무설치, 의무운영 기간을 폐지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 시 매립장 설치 기피로 매립업계의 입지가 역으로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이부분도 검토 요망

# 매립시설 최소 설치기준 강화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의견

---

현행	건의(안)	건의사유

2014. . .

업 체 명 :

담 당 자 :

연 락 처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귀중